

토 론 문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s)의 회사법제화 방안 검토 -

김명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블록체인기술에 기반한 DAO의 법적 쟁점에 관한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뜻깊은 학술행사에서 안수현 교수님의 “탈중앙화 자율조직(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의 회사법제화 방안 검토” 발제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자이신 안수현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바와 같이,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적·제도적 비즈니스모델이 늘고 있으며, 중앙기관의 개입이 없이 설립되는 분산형 자율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설립 움직임이 국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DAO 방식의 분산형 자율조직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생겨나면서, 기존의 회사 조직과 DAO 간 경쟁 구조가 생길 수 있다는 안수현 교수님의 소개와 같이, DAO 방식으로 설립된 경제주체는 기존의 기업·회사가 사회 경제 체계 내에서 수행하였던 것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s)은 자금조달 과정에서부터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토큰 발행과 스마트컨트랙트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DAO 참여자들의 지분이나 해당 지분에 비례한 의결권은 소지한 토큰의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DAO의 조직 설립 과정이나 자금조달 과정, 조직 운영과정은 기존의 기업·금융 규제 대상이 되는 경제주체 및 조직 운영체계 내지 자금조달 방식의 양태와 유사한 특성을 가집니다.

다만, DAO 조직의 설립·운영 내지 DAO의 공모형 자금조달 과정에서 DAO 참여자들은 수평적 의사결정방식과 스마트컨트랙트 등의 시스템을 통해 운영을 해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기업법제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발행 규제 등에 대한 제도 설계와 다른 고려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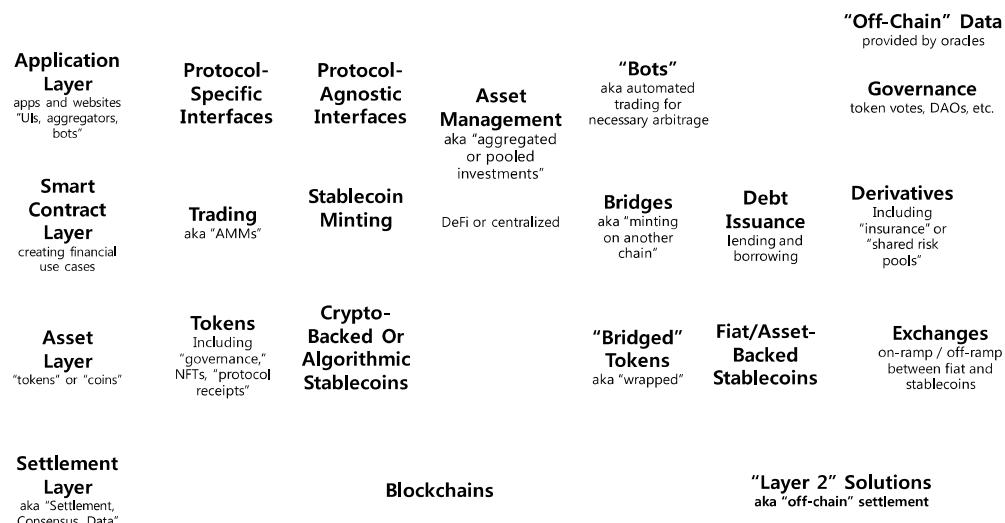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안수현 교수님께서 결론에 갈음하여 제언해주신 국내에서의 탈중앙화 자율조직 규율시 고려사항은 DAO의 회사법적 지위에 대한 고민과 DAO 설립·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정한 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기준을 잘 제시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버몬트주, 아이오와주, 테네시주에서의 입법 사례와 같이 LLC의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방식도 입법론적 고려 대상이 될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회사조직으로서의 특별 고려 규정이나 참여자 보호 방안 등을 함께 설계하는 것, 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현행의 조합 형태 DAO에 대한 법률상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각 DAO의 발전 단계별로 모두 필요한 입법적/기술적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DAOs의 지배구조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DAO 관련 법

제 개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안수현 교수님의 훌륭한 발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교수님의 고견을 청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블록체인기반의 DeFi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IOSCO의 보고서에 따르면 각 Layer 별로 각 계층 구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DAOs 관련 입법 개선 방향에서, 발제자께서 생각하시는 각 계층별 투명성 확보 내지 참여자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발생 지점과 블록체인 특유의 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지요?

〈그림〉 블록체인기반 스마트컨트랙트와 프로토콜, DAPP 계층구조



출처: IOSCO, Decentralized Finance Report, March 2022. p.4.

2.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고 일반투자자나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고려와 보호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DAO의 설립/조직/운영/분배 등의 과정에서 각 DAO 참여자들 중 전문투자자나 지배주주, 사실상의 지배주주, 대주주 등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그룹이나 행위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참여자의 구분 기준에 대한 깊은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